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비영리법인·단체) 명시〉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7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노중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8.
3. 회부연월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해 안전기준 설정, 표시의무 부과, 안전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어린이제품은 영유아·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임.

만약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주요 고객인 제조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

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실제로 전기·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과거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어, 영리법인의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려던 정부 개정안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철회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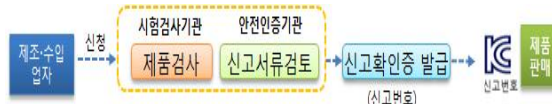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 ----- 위하여 제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중에서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생활용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위해도(危害度)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 4단계로 구분된 안전관리 절차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현행 제품안전관리¹⁾ 제도 현황]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품목		
				전기*	생활*	어린이
인증 위해도 ↓	↑	① 안전인증 (45개 품목)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인증기관) → KC 표시	36	5	4
		② 안전확인 (106개 품목)	 제품검사(안전확인시험기관) → KC 표시	64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자체 제품검사 可 → KC 표시	76	16	14
		④ 안전기준준수 (26개 품목)	 KC 표시 안함 (별도 사전 인증 규제 없음)	-	26	-
	합계			283개 [전기·생활(249개)/어린이(34개)]	176	73

*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적용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안전인증²⁾’은 어린이에 대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제품군에 적용되는 제도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 실시한 후 KC 마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현황]

구분	기관명	지정 품목
어린이 제품 (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KATRI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KOTITI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자료: 산업통상부

현행법 제15조³⁾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⁴⁾에서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공산품안전관리를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산품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2.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령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가 위해도가 가장 높은 제품에 적용되고, 특히 소비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인증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지정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기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일정한 시험설비·인력 등의 역량을 갖추면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진입 규제에 해당되므로,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도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⁵⁾하였고,

-
4.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 관련 국제규격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검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7.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
- 5)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비영리/영리) 개선 요구 관련 경과(2018~2023)

2023년 12월 산업통상부는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규제 정비방안⁶⁾’의 일환으로, KC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영리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⁷⁾하였음.

동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중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과, ②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임.

그러나, 2024년 5월 정부가 국민의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⁸⁾에 대해서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⁹⁾’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월) 공정위에서 현행법령의 인증기관 비영리 요건 폐지 검토 요청*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 일환- (‘20.3월) 비영리 요건 관련 국무조정실 문의- (‘23.3월)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영리기관 허용)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협의 |
|---|

자료: 산업통상부

6)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2024.02.27.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7) 입법예고 기간: 2023.12.26.~2024.02.24.

8)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및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임.

9)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05.16.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발표하자,

KC인증 의무화에 따른 인증 비용¹⁰⁾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값싼 해외제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¹¹⁾과 함께,

영리기관의 지정 허용으로 인해 인증기관 간 과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안전이 후퇴될 수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¹²⁾되면서,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¹³⁾함에 따라 현재까지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로 유지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진입 허용 논란을 고려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법률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임.

11)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반발에…정부 “유해성 확인된 것만 차단”(경향신문, 2024.05.19.)

12) ”KC인증 기관 간 경쟁 촉진“ 한다는 정부…인증기관 민영화 논란(오피니언뉴스, 2024.05.23.)

13)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국경제, 2024.05.27.)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개정안과 같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리법인·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진입 규제에 해당되고,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¹⁴⁾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안번호 제2212465호,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안, 2025.08.28. 발의)